

제339회 임시회  
2015.04.30.(목)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04.30.(목)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5년 04월 1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0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04월 22일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박종철)

### 가. 제안이유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2015. 8. 31.까지) 도래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정된 정원을 삭제하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가) 지방공무원 총수: 3,145명 → 3,150명, +5명(교육전문직원)

2)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 개정 및 직급 조정(안 별표 3)

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상담부장)

나)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

3)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

가) 행정 4급△1, 교육행정 5급△1,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7급△1  
(안 별표 4)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수요 증가로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전문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정원을 삭제하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 지방공무원 총수를 3,145명에서 3,150명으로 교육전문직원 5명을 증원 하였으며,
- 교육전문직원 5명 증원의 세부 사항은
  -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연구부장의 직급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 한시기구로 설치<sup>1)</sup>되어 운영되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폐지 시한(2015. 8. 31.까지)이 도래됨에 따라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 12. 12) 의결, 2012. 12. 28. 시행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3,145명”을 “3,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31명”을 “236명”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체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